

어르신들의 “꼭” 필요한 복지용구

“필요할 때”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기간만큼”

종사자 윤리 지침



성남의료기복지용구

종사자 윤리지침

센터운영자,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수급자가 센터의 모든 복지용구 물품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수급자가 시민으로서 또한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복지용구 공급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수급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지식과 서비스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복지용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 및 복지용구 설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수급자는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수급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수급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수급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수급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수급자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진정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